

제179회 영등포구의회  
2013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 
개선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

2013. 11. 26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## 1. 경 과

의안 제262호로 2013년 11월 14일 김종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영등포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등을 규정함.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나. 기본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.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다. 보행공간 확대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.  
(안 제7조, 안 제8조)

라. 보행환경시설 및 보행공간 점검에 관하여 규정함.

(안 제9조, 안 제11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의 불법주차, 각종 도로 정비사업, 보도나 도로 상 무단점유 등으로 도심 속 보행 공간은 날로 혼잡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내용을 보면  
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,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,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보행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고, 어린이 통학로 개선과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공사로 인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.

○ 그동안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기본적인 보행권도 확보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온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2008년에는 총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36.4%를 차지하였고, 2012년에는 37.6%로 증가하여 보행 교통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2년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고 2013년에는 전국에서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 10곳을 ‘보행환경 개선지구’로 지정해 보행자전용길 지정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○ 따라서 본 제정안이 영등포구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, 재래시장, 어린이 통학로, 장애인 보호구역 등 지역여건이나 주민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반영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# 관 련 법 령

### □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

**제3조(보행권의 보장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,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·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설치,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.
2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,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3. 보행정책의 수립·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.

4.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·합리적으로 조성·정비·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·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# □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**제4조(국가 등의 책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